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18

2021. 11. 24.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4. 복진경 의원 등 5명

나. 상정의결

-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1. 24.)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복진경 의원)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사항 및 전자표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의장선거 시 경선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의사운영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련근거 법 조항 수정(안 제1조, 14조, 70조, 79조)

나. 맞춤법 수정(안 16조, 67조)

다. 의장 선거방법 신설(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라.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마.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개정(안 40조)
바. 회의록 공개대상 명확화(안 47조)
사. 의장의 위원회 발언 조항 신설(안 52조의 2)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효섭)

○ 인용조문 적용 등

- 안 제1조, 안 제14조, 안 제70조, 안 제79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사항이고, 안 제16조, 안 제67조는 맞춤법 수정사항으로 적절하다 판단됨

○ 의장 선출방식 변경

- 현행 의장선출 방식은 후보등록 없이 전체 의원이 후보가 되어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선출 방식으로, 후보검증 절차와 의회운영에 대한 소신 및 공약을 알 수 없었음
- 참고로 교황선출식의 타 지방의회의 경우 파벌형성과 밀어주기 등의 폐단이 언론 등에서 보도된 바 있음
- 금번 개정조항은 후보등록 제도, 즉 경선제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공개적인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통해 선출하는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어 합리적으로 보임

○ 기타변경 사항

-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안 제18조의 2) 조항 신설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치사항 임

- 표결방법(안 제40조) 조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의 기록표결에 따라 전자투표를 도입한 사항이며,

-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안 제47조)는 「지방자치법」 제84조(회의록) 제4항 내용 변경으로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임

-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안 제52조의 2) 조항 신설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삭제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중앙정부의 권고안에 따른 일부개정안임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보여짐

○ 다만, 개정안 접수(2021. 11. 4) 이후 중앙부처의 권고안이 재시행되어 내용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됨

◈ **수정의견(안)**

개 정(안)	수 정(안)
제18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제18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8개 구만 경선제를 채택하고 있고, 국회나 서울시의회도 의장이 정견발표를 하지 않는데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 답 변 : 선도적인 조례도 의미가 있고, 건강하고 투명한 의회 문화를 위해서는 의장후보가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2년 동안 어떤 일을 할지 공약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함

○ 질 의 : 전체 의원 간담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해보는 것은 어떤지

○ 답 변 : 의원발의 사항을 전체 의원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상임위를 무색하게 할 수 있고,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함

○ 질 의 :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모두 경선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

○ 답 변 : 우선 의장선거에만 도입해보고, 차차 반영해 나갔으면 함

7. 토론 요지

○ 토론과정 중, 일부 조문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18호

제안일자 : 2021. 11. 24.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권고안(2021. 11. 4.)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 관련 사항을 규정함

2. 수정내용

○ 행정안전부 권고안(2021. 11. 4.)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 심의 관련 이의신청, 수리 및 각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함(안 제18조의2부터 안 제18조의3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안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8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복진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8

발의연월일 : 2021. 11. 4.
발 의 자 : 복진경·이상애·한윤수·
김형대·허주연(이상5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표결방법, 의장 선거 등 의사운영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근거 법 조항 수정(안 제1조, 14조, 70조, 79조)

나. 맞춤법 수정(안 16조, 67조)

다. 의장 선거방법 신설(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라.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마.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개정(안 40조)

바. 회의록 공개대상 명확화(안 47조)

사. 의장의 위원회 발언 조항 신설(안 52조의 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ㅏ”표가 새겨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의장 후보자 등록) ① 의장 후보자 등록은 해당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의3(의장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 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6조의4(의장 후보자 정견발표) ① 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대하 여는"을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을 때 의장은 표결을 선포하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7조 중 “관계공무원의”를 “관계공무원이”로 하고 , “위원장이”를 “위원장의”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하고, “의원이”를 “의원의”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를 “윤리특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후보자 등록 신청서(제6조의2 제1항 관련)

1. 선 거 명 :

2. 소속정당명 :

3. 선 거 구 명 :

4. 후보자성명 : (한자 :)

5. 생 년 월 일 :

6. 주 소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제 ○ ○대 강남구의회 ○반기 ○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후보자) ○ ○ ○ (인)

강남구 의회사무국 귀중

1. 선거명에는 의장선거를 기재합니다.

2.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게재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 ---------- ---------- ---------- ---------- ---------- ----------.
제6조(의장, 부의장 선거) ① ~ ④ (생 략)	제6조(의장, 부의장 선거)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ㅏ”표가 새겨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6조의2(의장 후보자 등록) ① 의장 후보자 등록은 해당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신 설>	제6조의3(의장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 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4(의장 후보자 정견발표) ① 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1조에 따라 개의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이 동의 할 때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 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사일정의 변경) ----------대하여는----------.
<신 설>	제18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0조(표결방법) ①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을 때 의장은 표결을 선포하고,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표결방법) ①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을 때 의장은 표결을 선포하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 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② <삭 제>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 ----------. ---------- 제1항----------.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④ <삭 제>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발언자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7조(구청장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7조(구청장등의 발언) ------ 관계공무원이 ----------위원장의---------.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이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조----------의원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징계 및 윤리심사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 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 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제79조(징계 및 윤리심사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 ---------- ---------- ---------- ---------- ---------- -------- 윤리특별위원회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 또는 윤리심사대상자에 대한 징계 또는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 ---------- ---------- ---------- ----------. ----- 법 제95조---------- ---------- ----------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